

공증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중 “제27조제1항·제2항, 제30조 및 제31조제1항·제2항을”을 “제27조제1항·제2항 및 제30조를”로 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대리권의 증명) ① 대리인의 촉탁으로 공증인이 증서의 원본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공증인은 제1항의 증서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서증서일 경우에는 그 증서 외에 서명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증서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50조제2항 중 “제31조제1항·제2항 및 제43조제3항을”을 “제43조제3항 및 제43조의2를”로 한다.

제56조의2제6항 중 “제38조까지 및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을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및 제43조의2를”로 한다.

제66조 중 “제43조”를 “제43조, 제43조의2”로 한다.

법률 제9416호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정년에 관한 특례) 임명공증인 및 공증담당변호사의 정년은 제15조제3항 및 제15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80세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증서 원본의 열람, 증서 등본의 발급 등에서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서명에 관한 증명서의 제출로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임명공증인과 공증담당변호사의 퇴직으로 인한 혼란과 문제 발생 방지를 위하여 2017년까지는 정년을 80세로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1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권재진  
법무부장관

●법률 제11155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교사죄·방조죄·예비죄·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과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

제9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이하 “성폭력범죄 피해자”라 한다)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원은 피고인의 질병 등으로 공판절차가 장기간 정지되거나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의 만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보호, 그 밖에 심리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이나 성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상사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의 죄명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법원 규칙에 위임하는 이원적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법원의 재판에 건전한 국민의 상식을 반영하고 사법신뢰의 향상을 위하여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을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확대하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등이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이러한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2차적 피해가 우려되므로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 또는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할 필요가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또는 통상절차 회부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안전 및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